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사례 43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부당공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를 한 신청인의 파산 사실을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558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4.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카드사가 회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과거 파산 이력과 그 이유 및 회사 내에서의 직무에 관한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파산 이력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보도를 게재한 인터넷 한국일보(2012서울조정559)와 인터넷 한국일보로부터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2012서울조정560)와 네이트(2012서울조정561), 다음(2012서울조정562)을 대상으로도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인터넷 한국일보가 기사를 수정하여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였으며, 네이버, 네이트, 다음 역시 인터넷 한국일보의 후속보도를 송고받아 게재함에 따라 신청인은 각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한국일보 : 『카드사기 정보 유출… 모든 걸 잃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24면)

내 용 : ○○계 생활용품 전문업체에 다니고 있는 정 모(34) 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꽤 잘 나가는 ○○○○이었다. 사장의 총애를 받으며 사장 비서 업무까지 1인 2역을 맡을 정도였다.

업무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정씨에게서 그 행복을 앗아간 건 카드회사였다. 작년 8월 회사측이 A카드사에 정씨 명의의 법인 개별카드를 신청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총무팀장 역할을 하려면 법인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2006년 가족이 잘못 선 보증 탓에 파산 경험이 있던 정씨는 혹시 과거 파산 이력이 알려지지 않을까 난감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정씨는 “설마 카드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도 없이 회사측에 알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씨의 파산 경력 때문에 법인카드 발급이 거절됐다. 회사측이 카드사에 거절 사유를 캐물었고, 카드사 직원이 회사측에 카드 발급 거절 사유를 알려줬다.

한때 ‘파산자’였다는 낙인은 정씨가 8년여 간 회사에서 쌓아 올린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미 파산 면책도 받았고, 지금은 대출 한 건, 연체 한 건도 없지만 회사는 그런 세세한 사정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회사 내에 소문이 급속히 번졌고, ○○ 본사에도 이 사실이 통보됐다. 그의 업무가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 관련 업무를 내놓게 했고, 최근엔 ○○○○ 직책까지 박탈됐다. ○○의 일정을 관리하는 단순 ○○ 업무가 남긴 했지만 이조차도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업무만 빼앗긴 게 아니었다. 파산자라는 이력 때문에 정씨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이보다 훨씬 더 심했다. “업무상 택시를 탔는데 평소보다 좀 비용이 많이 나왔나 봐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느냐고 일일이 따지더라고요. 심지어 직원들과 같이 마시는 커피 비용까지 추궁을 당해야 했어요. 파산자니까 회사 비용을 착복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정씨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추가적인 신용 조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씨는 8월 이후 두 차례 본인의 신용정보가 조회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본인 요청으로 조회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정씨는 휴가 중이었다.

카드사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A카드 관계자는 “직원이 실수로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회사측에 전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 조회 건에 관해서는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회사에서 직원의 법인카드 발급 불가 이류를 물었을 때 답해주지 않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를 해당 회사에 알려줄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 김○○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 불가 이유를 물어본 회사나 그것을 알려준 카드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기사수정, 유감표명



사례 44

여성 재소자인 신청인이 수감 중 출산한 자녀를 친정으로 보낸 사연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혼사실 등 사생활까지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787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2.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법무부 교화방송센터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내보내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로 복역중인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에서 가명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죄명, 구체적 사건 내용, 형량, 부모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게재되었고 기사에 실린 사진에 신청인 자녀의 실명이 적힌 원고가 찍혀있는 등 주변에서 알게 되어 피해가 크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전재한 조선닷컴(2013서울조정1788)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2차 조정기일 심리에서 양 당사자가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2013서울중재1, 2013서울중재2(병합))를 하였다.
- 담당중재부는 법무부 교화방송 측의 사실조회를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보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감옥서 18개월 기른 둘째와 헤어지던 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못한 엄마 되지말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11면)

내 용 :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엄마입니다.”

13일 낮 12기 40분쯤 전국 50여개 교도소·구치소의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이렇게 시작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작년 ○월 지인들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첸 죄(사기)로 징역 ○년 ○개월을 선고받고, ○○여자교도소에서 1년 8개월 동안 복역 중인 ‘○○이 엄마’ 박○○(34·가명)씨가 쓴 편지였다.

법무부 교화방송센터가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각 교도소·구치소에 내보내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 재소자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직접 사연을 보낸 것이다.

박씨는 교도소에서 낳아 18개월간 길러온 둘째 아들 ○○이를 지난달 12일 경기도 ○○○시 친정으로 떠나보냈다. 그는 작년 ○월형이 확정되자마자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고, 두 살배기 큰 아들 ○○를 친정 부모에게 맡겼다. 그리고 임신 상태로 ○○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지 한 달 만인 작년 4월 낳은 둘째가 바로 ○○이다.

‘여성 재소자가 출산하는 경우, 18개월까지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지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박씨는 수형 생활을 하면서 ○○이를 길렀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매일 잠도 함께 잤다. 교도소의 갇난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엄마 품에서 한시도 떠날 줄 몰랐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배웠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1년 6개월이 흘렀다. 전국 각 교도소에서 크던 12명의 ‘양육 유아’ 중 하나였던 아들 ○○이는 지난달 12일 교도소를 떠나야 했다.

박씨는 자신의 편지에서 “마음속으로 수십 번 준비했던 그날, 18개월 된 아들 ○○이를 보내야 했던 그날, 울지 말아야지 몇 번을 다짐했는데 그제 안됐습니다”라고 했다.

○○이가 떠나기 전날, 박씨 모자(母子)는 교도소 측의 배려로 교도소 내 ‘가족 만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를 데려가려고 온 박씨의 부모, 큰아들 ○○도 함께였다.

다섯 가족은 저녁밥을 지어먹고, 같이 TV도 보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이는 “형아 형아”하면서 ○○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떨어져 지내던 두 아이는 서로 과자를 먹여주고,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았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을 알기라도 하듯 두 아이는 그날 밤부터 엄마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는 “엄마 나랑 같이 집에 가자, 난 엄마만 좋아”라는 말만 수십 번 반복했다.

“응, 내일 다 같이 가자”라는 말로 안심시켰지만, 아이는 자면서도 박씨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튿날 ○○는 박씨 품에 안긴 채 “엄마도 같이 가게 옷 입어, 엄마가 양말 안 신으면 나도 안 신어”라며 떼를 썼다.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 ○○이는 옆에서 생글생글 웃기만 했다. 평소에도 양말만 신으면 어디 밖이라도 나가는 줄 알고 좋아하던 아이였다. 저만치 떨어져 이들을 지켜보던 박씨의 부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박씨는 “엄마가 여기 청소하고 따라갈게”하고 약속한 뒤에야 두 아이를 떼어낼 수 있었다. ○○이는 할머니 등에 업혔다. 그렇게 이별이었다. 박씨는 아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다 가족 만남의 집을 빠져나왔다. 다른 재소자들처럼 가족들을 출구까지 배웅할 자신이 없었다.

박씨가 두 아들을 떠나보내던 그날 밤 직접 쓴 이 편지 말미에는 지나날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심정과 아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

“교도소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면서... 이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못난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애들아 엄마 빨리 곁에. 아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한다 아기들아, 사랑한다 내 새끼들.”

박씨는 만기 출소(2014년 1월)를 1년2개월 앞두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쉽지 않겠지만, 출소하면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 것”이라고 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예요. 두 아이를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후 중재합의가 이루어져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림

